

15%미만 일지라도 증가 후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 규모이상일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조례 개정안은 동 조례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은 그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30%이상이거나 30%미만인 경우에도 증가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 규모인 경우에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음.

이는 기존 15%보다 100%를 더 완화시키는 규정으로써 완화폭이 과다하다 할 것이며 동 조례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기에 이렇게 완화시키는지, 또한 특정인을 위한 조례개정은 아닌지, 그 동안 조례운행을 하면서 30%을 완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사례가 있었는지 등 서울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본 후 15%로 할 것인지, 30%로 할 것인지 30%로 완화할 경우에 정말 필요한 일부만 할 것인지, 전체를 완화할 것인지,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악용할 소지는 없는지, 특정인을 위한 특혜시비는 없는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가. 수정이유

개정조례안의 개정안 외에 조례 전체에 복잡하게 표현된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골자

- 현행 조례 제17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의 “환경위원회”를 “환경심의위원회”로 변경함.
- 현행 조례 제18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교통위원회”를 “교통심의위원회”로 변경함.
- 개정안 [별표 1]의 비고 제4호의 라항 ……“다만 별표1제1호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가목 도시의 개발란(10)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음에 “중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추가하고 “건축물은”의 “은”을 “는”으로 변경함.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7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중 “환경위원회”를 “환경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중 “교통위원회”를 “교통심의위원회”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4호의 라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별표1 제1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가목 도시의 개발란(10)에 해당하는 건축물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는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30퍼센트 이상이거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도 증가 후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로 한다.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중 “각 호”를 “각 호의 1”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친 사업의 경우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 및 검토항목에 대하여는 이를 중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 초안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지역이 2이상의 구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 제4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초안을 제출하는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초안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분리계약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본문 및 단서를 제1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저감방안,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의 조사결과 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이하 “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분야에 대하여는 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영향평가대행자에게 영향평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중 “영”을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시행규칙”으로 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평가서를 제출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분리계약 체결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중 “45일”을 “40일”로 한다.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6항 중 “환경위원회”를 “환경심의위원회”로 하며, 동조 제1항 중 “20인 이상 30인 이내”를 “30인 이상 45인 이내”로 하고, 동조 제2항중 “환경관리실장”을 “환경국장”으로 하며, 동조제5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여부

제18조제1항중 “교통기획과장”을 “교통계획과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교통위원회”를 “교통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21조 본문중 “각 호”를 “각 호의 1”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계획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분리계약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중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시장 및 사업지역 관할 구청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시정개발연구원”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으로 한다.

제28조 본문중 “호”를 “각 호의 1”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례 제3985호 부칙 제2조중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거나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신청하는 사업”을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거나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신청하는 사업”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2), (3), (5) 내지 (7)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4)는 삭제하며, 동목(10)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중 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사업 (5)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중 면적이 9만㎡이상 30만㎡ 미만인 것 (6)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중 면적이 9만㎡이상 30만㎡ 미만인 것 (7)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중 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전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전 또는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전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전
---	---

별표 1 제1호라목 (1)의 대상사업의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동법 제61조제2항”을 “동법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건설사업중 다음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2km 이상 4km 미만의 신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서는 폭 25m 이상으로서 도로구역에 동법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이 1만5천㎡ 이상 3만㎡ 미만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도로법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 및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2차로 이상으로서 5km 이상 10km 미만의 확장. 단, 도로구역에 동법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이 1만5천㎡ 이상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1 제1호마목 (1)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삭도· 퀘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전”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바목 (1)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단서중 “받은”을 “받는”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사목 (2)를 다음과 같이 하고 (3)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을 “도시공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설치사업중 공원시설 면적의 합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 또는 동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공원의 설치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으로 한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중 조성 면적 또는 동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 시설지구의 면적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	○ 자연공원법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전
--	--

별표 1 제1호아목 (1)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산지전용면적이 6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전,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것에 한한다)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	---

별표 1 제1호자목 (1)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 도시계획법 제21조”를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로 하고,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의 괄호중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전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설치의 협의 또는 승인 전”을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전”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2), (3), (5) 내지 (7) 및 (9)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4)는 삭제한다.

<p>(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중 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p> <p>(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사업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사업</p> <p>(가) 유통업무설비로서 부지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p> <p>(나) 유수지로서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p> <p>(5)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p> <p>(6)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중 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p> <p>(7)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중 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p> <p>(9)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설치공사중 부지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전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전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전 ○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설립인가 전(국가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p>별표 1 제2호나목 (4)의 대상사업의 범위 및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 시기란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p> <p>별표 1 제2호다목 (4)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3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으로 한다.</p> <p>별표 1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다음 페이지에 계속)</p>	

<p>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에서 시행되는 다음 사업</p> <p>(1)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설치로서 조성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p> <p>(2)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지훼손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전(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계획의 확정전) ○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전,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전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전, 광물채광의 경우에는 광업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안에 지정된 것에 한한다)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전
--	--

별표 1 제2호바목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설치의 협의 완료 또는 승인전”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달한 때

나.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의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대상 규모 미만에서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동일영향 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나, 당해 사업규모가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와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른 때. 다만,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된 경우로서 그 개정당시에 당해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15퍼센트 이상이거나 15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도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다.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의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다음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1)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당시에 당해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대상 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이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나 당해 사업규모가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와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른 때

(2)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 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당시 당해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당해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의 당시 규모보다 15퍼센트 이상이거나 15퍼센트 미만일 경

우에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라. 이 조례에 의한 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승인등을 득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15퍼센트 이상이거나 15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도 증가 후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다만, 별표 1 제1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가목 도시의 개발란 (10)에 해당하는 건축물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는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30퍼센트 이상이거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도 증가 후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로 한다.

별표 2 제3호 사회·경제환경분야중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문화재 또는 역사·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물·유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리계약체결에 관한 적용례)제6조제3항·제7조제2항·제8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작성계획서, 평가서초안 또는 평가서를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는 별표 1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법률 제6916호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분야별 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적용례)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중 왕릉·고분묘인 경우에는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536
------	-----

2004년 9월 . 6일
교육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4년 8월 1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51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2004.9.6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교육정책국장 박헌화)

가. 개정이유